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기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43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25일
발 의 자: 김기덕 의원(1명)
찬 성 자: 강동길, 강석주, 김규남,
김성준, 김용일, 김원태,
김형재, 남창진, 박영한,
박철성, 소영철, 송재혁,
아이수루, 유정인, 유정희,
, 윤종복, 이영실, 이종태,
이효원, 임규호, 임종국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서점의 정의를 세부적으로 규정함(안 제2조).
- 나. 위원회 운영 횟수를 1년에 두 차례 이상으로 규정함(안 제10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,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(첨부)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지역서점”이란 「출판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의 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.

1.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
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

제10조제1항 중 “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”을 “1년에 두 차례 이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지역서점"이란 일정 기간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지역서점"이란 「출판 문화산업 진흥법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
<p>제10조(회의 · 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.</p>	<p>제10조(회의 · 운영) ① -----1년에 두 차례 이상 ----- ----- ----- -----.</p>